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방시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제5회 중앙·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「자치조직권 확충방안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인구 10만미만 시·군·구 부단체장 직급 조정 등(안 제71조, 부칙)

- 1) 인구 10만미만 시·군·구 부단체장과 실·국장의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하여 지휘·통솔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, 인구 5만이상 10만미만 시·군·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함
- 2) 부단체장 직급기준 인구 범위와 실·국 설치기준 인구 범위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단체장 직급기준 인구 범위를 실·국 설치 인구기준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인구 외에도 외국국적동포, 등록외국인 등 외국인 수를 포함하여 기준을 통일함

나.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현실화(별표 5, 부칙)

- 1) 지방의회 기능·역할이 지속 증대함에 따라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

-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인상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·도는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, 시·군·구는 현행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함
- 2) 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한 특례로 지자체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변경된 지급범위 내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부칙에 규정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7항제1호 및 제3호 중 “10만”을 각각 “5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에 인구는”을 “때에는”으로, “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”를 “자치구의 인구(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, 국내거소신고인 명부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별표 5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의정활동비 지급범위	
	의정자료수집·연구비	보조활동비
시·도의회의원	월 1,500,000원 이내	월 500,000원 이내
시·군·자치구의회의원	월 1,200,000원 이내	월 300,000원 이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시장·부군수 등의 직급 상향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된 부시장·부군수 및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이 영의 직급기준

에 따른 부시장·부군수 및 부구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제71조제7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한 특례) ① [별표5]의 개정 규정의 시행을 위해 이 영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,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제34조와 제35조(제1항은 제외한다)에 따른다.

②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은 이 영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,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때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1조(부시장 · 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) ① ~ ⑥ (생 략)	제71조(부시장 · 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 음)
⑦ 시의 부시장,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	⑦ ----- ----- -----.
1. 인구 <u>10만</u> 미만의 시 · 군과 광역시의 자치구: 지방서기관	1. --- <u>5만</u> -----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인구 <u>10만</u> 이상 50만 미만의 시 · 군과 광역시의 자치구: 지 방부이사관	3. --- <u>5만</u> ----- ----- -----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⑧ 제7항을 적용할 <u>때에</u> 인구는 해당 시 · 군 또는 <u>자치구에 주 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</u> 기준으로 하며, 인구 변동에 따 른 직급 조정 등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다.	⑧ ----- <u>때에는</u> ----- ----- <u>자치구의</u> <u>인구(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</u> <u>표, 국내거소신고인 명부 및 외</u> <u>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</u> <u>람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. 이</u> <u>하 같다)</u>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⑨ (생 략)	⑨ (현행과 같음)

■ [별표5]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(제33조제1항제1호 관련)

구분	의정활동비 지급범위	
	의정자료 수집·연구비	보조활동비
시·도의회 의원	월 1,200,000원 인내	월 300,000원 인내
시·군·자치구 의회의원	월 900,000원 인내	월 200,000원 인내

< 신설 >

■ [별표5]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(제33조제1항제1호 관련)

구분	의정활동비 지급범위	
	의정자료 수집·연구비	보조활동비
시·도의회 의원	월 1,500,000원 인내	월 500,000원 인내
시·군·자치구 의회의원	월 1,200,000원 인내	월 300,000원 인내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시장·부군수 등의 직급상향조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된 부시장·부군수 및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이 영의 직급기준에 따른 부시장·부군수 및 부구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제71조제7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한 특례) ① [별표5]의 개정 규정의 시행을 위해 이 영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

	<u>있다. 이 경우,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제34조와 제35조(제1항은 제외한다)에 따른다.</u> <u>②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 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 액은 이 영 제35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,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때 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 한다.</u>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06